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항
의 결 연 월 일	2022. . . (제 회)	

공 직 인 사 혁 신 위 원 회 의 설 치 및
운 영 에 관 한 규 정 폐 지 령 안

제 출 자	국무총리 (인사혁신처 소관)
제출 연월일	2022. . .

법 제 처 심 사 전

1. 의결주문

공직인사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새 정부 출범 등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공직인사혁신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공직인사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국무조정실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입법예고(2022. 8. 12. ~ 8. 23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2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공직인사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

공직인사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관	
연 락 처	(044) 201 - 8301